

# 보 고 사 항

## □ 제58회 화순군임사회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1. 24 집행부 이송
  - 공 포 일 자 : '97. 12. 11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제 1525 호

## □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위원장 : 조 기 영 부의장
- 간 사 : 정 광 수 의 원
- 위 원 ( 11 명 )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	

## □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

'97. 12. 17자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 정 도 현 농촌지도소장 → 정 년 퇴 직
- 김 정 옥 사회지도과장 → 농촌지도소장 직무대리

## □ 대리 출석자 지정 보고

대리 출석일시	불 참 자		대 리 출 석 자		불 참 사 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97. 12. 20 (土) 10:00 ~ 11:00	재무과장	정부웅	기획 감사실장	이 수 철	춘양 상수도 공사 입찰 종사

## □ 각종의안 발의 및 제출현황

### ○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1. 25 군수제출

#### ○ 제안이유

화순군 조례 제1494호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 규칙 제890호 화순군직제규칙 개정규칙에 의거 장학사업의 내무과 이관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 안 제7조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경영정책 실장은 직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기획실장은 직제개정으로 기획감사 실장으로 변경코자 함.

- 간사의 변경 ( 안 제11조 )

사무의 이관으로 정책개발계장을 교육계장으로 변경 하고자 함.

※ '97. 12. 15 총무위원회 회부

### ○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1. 25 군수제출

#### ○ 제안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소의 관장 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 안 제1조 )

- 화순군보건소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3조 제1항 )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 사업

- 노인복지사업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만성 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음용수에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신설 ( 안 제10조 )

※ '97. 11. 26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2. 15 군수제출

○ 제안이유

행정의 생산성향상 및 행정의 정보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에 의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금년에는 지역정보 서비스 쉼타 설치와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 전산실을 구축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본청 실과소간 근거리통신망을 구성, PC통신등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이를 전담할 기구가없어 이의 운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함. ( 안 제2조 )

- 군 본 청 : 248 명 (+ 4)
- 의회사무과 : 18 명
- 직 속 기 관 : 159 명
- 사 업 소 : 25 명
- 읍 면 : 315 명

※ '97. 12. 15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7. 12. 15 군수제출

○ 제안이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 예고통지 등과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등 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됨에따라 이를 심의하기위한 과세 적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보장 되도록 하기 위함.

○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 주요골자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신설 ( 안 제11조의2)

-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화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 적부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97. 11. 26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97. 11. 25 군수제출

○ 제안이유

화순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997. 12. 31 로 만료됨에따라 현행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재 시행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조

○ 주요골자

- 지방세법 규정에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될때"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과세 감면을 할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2조)
-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 사회체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 현행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으로 하고 "제1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 삭제
- 주차장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
-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15조)
-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17조)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8조)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안 제21조)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2조)

※ '97. 12. 15 -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97. 12. 15 군수제출

○ 제안이유

91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승인시의 배치 기준에는 다소 불부합하나 정원의 책정기준(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이상 읍면에 1명)에 미달한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을 삭감 이를 군 본청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 및 돌발 영세민 관리 업무등을 담당 하도록 하기 위함 임.

○ 주요골자

-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함. (안 제2조)

- 군 본 청 : 249 명 (+ 1 )
- 의회사무과 : 18 명
- 직 속 기 관 : 159 명
- 사 업 소 : 25 명
- 읍 면 : 314 명 (- 1 )

※ '97. 12. 15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 '97. 12. 17 군수제출

○ 제안이유

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군 공보의 발행시기 및 게재사항 규정
- 공보등의 형식
  - 화순군공보 : 관보형
  - 화순군정홍보지 : 신문형
  - 화순군사 : 단행본

·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구성인원 : 10 명 내외

- ┌ 당연직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 └ 위촉직 :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

- 운영 : 위원회는 수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료수집 및 배부 범위 규정

- 군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군민, 기타 투고장
- 게재된 원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 지급
- 공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 범위는 별도로 정함.

· 위원회의 실비 변상 및 효력 규정

-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함.
-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

※ '97. 12. 17 총무위원회 회부

○ 1997.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97. 12. 19 군수제출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141,545	122,112	19,433	증 5.9 %
일 반 회 계	114,711	110,701	4,010	3.6
특 별 회 계	26,834	11,411	15,423	135.2

※ '97. 12. 19 각 상임 위원회 회부

## □ 민원서류 접수현황

### ○ 춘양면 방위협의회 건물 신축 건의 - '97. 12. 10

○ 건의자 : 춘양면 방위협의회 위원장 노 병 곤 외 15 인

○ 건의내용

- 춘양면 석정리 573-9번지 소재 춘양면 방위 협의회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25년이 경과되어 붕괴에 직면해 있어
- 현 춘양면 방위협의회 부지 ( 춘양면 석정리 573 - 87, 83 m<sup>2</sup> ) 를 군에 기부 채납 조건으로 군의 예산으로 신축 요망.

※ '97. 12. 13 총무위원회 회부

### ○ 제29호 국도 ( 한천 모산리 부근) 갓길 포장 진정 - '97. 12. 15

○ 진정인 : 한천면 모산리 김일남 외 61 명

○ 진정내용

- 한천면 모산리 부근을 관통하는 제29호 국도가 영농철에 주민 및 농기계 의 왕래가 빈번하나 갓길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 갓길 포장 요망 진정

※ '97. 12. 17 총무위원회 회부

## □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